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9. 6.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8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3년 8월 26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97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03년 8월 29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최창제)

가. 제정이유

-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자중에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안 제2조)
-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을 정함(안 제2조 제3항의 별표)
-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팩스, 인터넷,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함(안 제3조)
- 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함(안 제4조)
-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지함(안 제5조)
-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8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전문위원 최태성)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조례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스스로 환경오염 등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환경부의 “환경오염등신고포상금제도운영지침”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審査結果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의안 번호	60
----------	----

제출년월일 : 2003. 8. 2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우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자중에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안 제2조)
- 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을 정함(안 제2조 제3항의 별표)
- 다.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팩스, 인터넷,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함(안 제3조)
- 라. 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함(안 제4조)
- 마.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지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상금)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상금의 지급)
 - 환경오염 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환경부)
 -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외의 보상조례 준칙안
- 나. 예산조치 : 2003년도 예산에 1,000만원 반영
-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결과(2003. 7.21 ~ 8. 9)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우리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보상)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나중에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 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 ④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조(신고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일반우편·우편엽서·전화·팩스·인터넷·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확보)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배출 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액

1.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가. 지급율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가. 지급율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구 분	보 상 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5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20만원

4.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기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환경보전홍보차원에서 구청장이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간담회, 캠페인 참석자 등에게 5천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공중전화카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보상은 일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보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하며, 2인 이상이 동일사안의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